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안내

■ 노부모부양 특별공급(3세대) - 155㎡A : 1세대 - 84㎡B : 1세대 - 83㎡C : 1세대

구분	내용
공급 대상	· 전 주택형 / 주택 건설량의 3% 범위 내 / 9억원 초과 주택 제외
청약 통장	· 청약통장가입기간 6개월 경과 및 해당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 / 1순위 자격요건 필요
신청 자격	·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창군 및 경상남도, 부산광역시, 울산광시 지역에 거주 ·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을 3년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자 (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) · 청약 1순위 요건 충족 - 청약통장(청약예금·부금, 종합저축)가입 6개월 이상, 지역별 청약 예치금 이상 · 무주택세대주만이 신청할수있음 (세대의 구성원은 청약 불가) ※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한다. ※ 무주택세대주 기간 산정 시 노부모(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)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
유의사항	·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 가능함 ·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(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)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특별공급 신청불가 / 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 ※ 신청자, 배우자,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·비속 포함 (주민등록 등본표 기준) ※ 전용 60㎡이하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신청불가 ·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1순위 청약자격이 적용됨.

·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(경상남도 거창군) 거주자가 우선함
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,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.

-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'청약가점 산정기준('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별표1)'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.
-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,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,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.

거창 ES아뜨리움